

울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136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나1368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소182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인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3. 3. 9.

판결 선고 2023. 4. 13.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가소182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2020. 7. 21.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가 2020. 8. 25. 피고에게 C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매를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20. 7. 21.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00만 원임을 전제로 이를 초과하는 액면액의 위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착오이니 위 수표 액면액 중 차용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5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1,000만 원이어서 그에 상당하는 위 수표를 교부받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툼다.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급부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초과 지급한 500만 원이 착오 지급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자신의 위 부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한 점, 위와 같이 수표를 교부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 주소지 인근에 수표 발행 은행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한 후 그 중 500만 원을 거슬러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D에서 인출한 500만 원 이외에도 현금으로 보관하던 여유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진현

판사이정목

판사박주연